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

일시 2019년 7월 1일(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발 제

제 철 응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좌 장

윤 후 덕 국회의원

토론자

변 효 순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황 우 정 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정 익 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 현 주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 지 연 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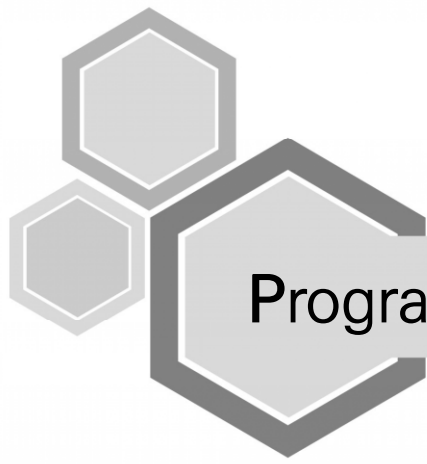
이 종 진 님 (보호종료아동 자립멘토 바람개비서포터즈)

허 민 숙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주 최

 국회의원 윤 후 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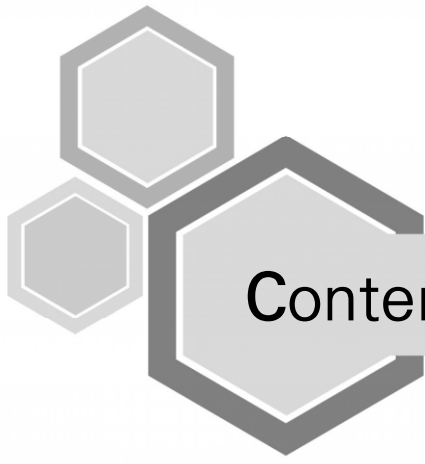




Program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0:00~10:10	[개회식] ○ 국민의례	진행자
10:10~10:30	[인사말]	
10:30~11:00	[주제발표] (30분)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철웅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1:00~11:40	[종합토론] ○ 좌 장 : 윤후덕 국회의원 ○ 토론자 - 변효순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 황우정 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강현주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김지연 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 이종진 님 (보호종료아동 자립멘토 바람개비서포터즈) - 허민숙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11:40~12:00	[질의응답]	
12:00	[폐 회]	



Contents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입법 공청회

주제발표

01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1

제철웅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종합토론

토론자 | 변효순 과장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17

황우정 과장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19

정익중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21

강현주 교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3

김지연 실장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26

이종진 님 (보호종료아동 자립멘토 바람개비서포터즈) 31

허민숙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35

별 첨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7

주제발표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제철웅 교수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철웅

다양한 유형의 부모

부모의 유형	특징
생물학적 부모	• 유전자로 자녀와 연결된 부모 • 생물학적 부모가 반드시 법적 부모가 아닐 수 있음
법적 부모	•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 모-출산한 모 부-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부 친생추정을 받지 않는 자녀-부 • 혼인 외 출생한 자녀: 모- 출산한 모 부- 인정한 생물학적 부(보조생식기술훈용의 경우는 법미비) • 입양부모
사회적 부모	• 미성년후견인 • 친권 없이 자녀를 직접 돌보는 법적 부모 • 미성년후견인으로 되지 않은 채 이동을 직접 돌보는 사람(위탁부모, 보호시설의 장 등)

구분의 필요성: 아동복지 우선의 관점에서 보면, 법적부모와 사회적 부모는 동일 또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

아동돌봄에서의 부모와 국가의 관계: 부모로서의 권리의무 및 친권자로서의 권한의 내용

부모로서의 권리의무		권한 내용 예시	비고
친권자	법정대리권한	아동명의 예금통장 개설, 예금 인출 대리, 보험금 청구 대리, 휴대폰 구매 등 통신계약 대리 등 각종 재산행위 학교 진학, 전학 기타 교육 관련 신청 대리 여권발급신청 대리, 주민등록등본발급 등 각종의 공법상의 신청행위 병원진료(통상의료, 중요한 의료처치)에 대한 동의, 거소결정권(수학여행 동의, 주소지 결정 및 주민등록지 이전) 등 신상관련 결정권의 대리 아동관련 소송 대리	아동 권리를 대신행사. 아동 교육의 1차적 책임. 부적절할 경우 친권제한, 박탈가능
	부수적 권리의무	아동을 직접 돌보는 것에서 비롯되는 권리·의무(징계,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흔히 양육권이라고 하는 것)	아동을 실제로 돌보는 행위에 수반되는 권리
부모	권리	자녀의 성과 이름의 부여, 자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자녀에 대한 부양청구 자녀의 신분관계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리	법적 부모의 책임
	의무	자녀를 부양할 의무	

사회적 부모는 법적 부모의 친권을 대신 행사. 그러나 부모의 권리, 의무를 가진 것은 아님

부모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것의 정당성

- **친권의 핵심**은 아동의 권리를 친권자가 대리 행사하는 것(아동이 권리의무의 주체이기 때문). 아동은 친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것을 지켜봄으로써 성인이 되어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때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행사하고,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를 배우게 됨.
- 부모 역시 아동이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이 아동의 권리를 대신하여 행사할 때 아동으로 하여금 이를 지켜보고 배우게 할 **자연법적 이익**이 있음.
- **사회적으로 볼 때** 이런 역할을 부모가 가장 잘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부모에게 친권을 부여하는 것이 정당화됨: 친권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fremdnütziges Recht)이고, 친권자는 독자의 권리주체인 아동의 복리에 맞추어 행위할 의무가 있음; 영국법에서도 부모의 책임(parental responsibility)의 유력한 정당화 근거 중의 하나로 들기도 함.



지자체의 사회적 부모(social parents as corporate parents) 로서의 역할

-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 아동의 법적 부모를 대신함. 같은 처지의 합리적인 부모였더라면, 친권자로서의 책임을 어떻게 수행하였을까를 염두에 두면서 돌보아야 함. 특히 아동은 성인기로의 전이를 대비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인으로의 성공적 성장에 대한 책임이 지자체에 있음(지방자치단체의 친권자 역할의 수행). 합리적 부모란 부유한 사람을 의미하지 않음. 저소득층이라도 자신의 소득수준에 맞는 합리적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음.
- 시설미성년후견법에 따라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게 하였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없어진다고 인식하는 것은 책임 방기임. 보호대상 아동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하에 있고, 보호시설의 장이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전제한 것이기 때문.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책임

- 국가는 가족 돌봄이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아동, 장애인 또는 노인)에 대해 합리적 부모, 합리적 자녀의 관점에서 지원을 해야 함-이것이 사회통합을 이루고, 인간의 모습을 한 국가를 만드는 첩경임.
- 질병에 예방이 중요하고,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조기 치료가 중요하듯이, 인간의 성장에서도 좋은 사회-가족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예방과 조기개입).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적, 개인적 비용을 줄이는 길임.
- 위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개입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임. 국가는 합리적 부모의 관점에서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지원을 계획해야
- 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그동안의 돌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문제상황을 시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성인기로 성공적으로 넘어갈 수 있는 gateway 역할을 할 수 있음.

외국의 제도와 비교했을 때의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

- 성인기 전이과정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과 비교할 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현저히 미흡한 지원이 있음.
- 지원은 보호종료 청소년의 개인적 필요에 맞추어지 않은 것(보호대상 청소년의 개인적 청구권=사회보장급여청구권으로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임)
- 이미 확정된 내용의 지원(중심은 경제적 지원)에 보호대상 청소년이 어떻게 접근하여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짐
- 성인기로 전이하는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 겪는 정서적, 심리적 지원은 없음.
- 가장 큰 문제는 미흡한 지원이라도 제한된 범위의 보호대상 아동=아동복지법상의 보호종료 청소년에게만 제공되고,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기타 여가부 산하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호대상 아동 내에서의 차별.

독일의 보호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

- 대상은 18세부터 20세까지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권리로써 이를 지원을 청구할 수 있고, 21세부터 27세까지는 개인적 필요성을 심사하여 지원
- 지원내용은 보호종료 청년의 생계비 지원(SGB VIII 제41조, 제33조, 제39조), 주거 지원(동법 제41조, 제34조),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원(동법 제41조, 제35조의a), 상담(동법 제41조, 제28조), 그룹활동 지원(동법 제41조, 제29조), 가족과의 관계 회복 관련 지원(동법 제41조, 제31조), 직업훈련 및 교육, 재활 등의 지원(동법 제41조, 제27조), 병원 치료(동법 제41조, 제40조) 등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 2013년 기준 연간 11조원이 지원



영국(잉글랜드) 보호대상 청소년 지원

- 대상: 첫째, 14세부터 최소 13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하에 있는 현재 16세부터 17세까지 아동(자격대상아동), 둘째, 14세부터 최소 13주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하에 있었고,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벗어난 16세부터 17세까지의 아동(관련 아동), 셋째, 아동법에 따른 보호명령, 비행 등으로 보호조치를 받았거나 임의로 지방자치단체의 보호 하에 있었던 18세부터 21세까지의 아동으로서 자격대상아동이거나 관련아동인 자(종전 관련 아동) 등이 대상이다. 이들 자격 있는 아동이 고등교육 또는 계속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지원이 연장
- 지원내용: 아동의 개인별 니즈(needs)를 조사하여 개인별 성인기 전이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게 된다(아동법 제23조의E). 전이계획에는 **아동과 개인적으로 접촉하여야 할 사람과 빈도, 주거계획, 교육 또는 직업훈련계획, 직업 수행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을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 아동이 적절한 가족관계 또는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내용의 확정, 독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프로그램 계획, 주거와 생계비 충당을 위해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할 재정지원 계획, 아동의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 계획, 전이계획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의 임시조치계획** 등이 포함
- 지원책임: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을 위한 개인별 지원자(persona advisor)가 청소년을 옹호함. 독립된 지위를 가짐.
- 2013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약 2억 6500만 파운드(2014년 1월 2일 기준 환율 1775원을 기준으로 하면 약 4,700억원)를 지출

특별법안의 적용대상이 되는 아동의 범위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
-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라 가정위탁된 아동
-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 대상 아동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아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있는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의 아동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에 있는 아동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제1호 및 제2호의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있는 아동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등에 있는 아동 등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에서 유사성이 있는 시설**

특별법안의 적용대상 아동 중 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있는 아동

1.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노숙인시설 등 포함), 위탁가정 가정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2. 여가부 산하 보호시설을 떠났거나, 보건복지부 산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을 떠난 아동·청소년으로서, 그가 14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었고, 또 현재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서 가정복귀가 되지 않았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돌봄이 취약하여 성인기로 전이하는 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청소년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 이렇게 함으로써 보호의 공백을 최대한 없애기 위한 것임. 여가부 산하 보호시설에 현재 있는 아동은 이 법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음. 그 기간 동안은 여가부와 복지부 등의 협의를 거쳐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시도를 하게 될 것임. 여가부 산하 보호시설을 떠날 때 위 요건에 해당되면 자립지원의 대책이 생김. 그 시설에 있으면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면서 동 시설을 떠날 때의 계획을 이 법안에 따라 준비해 둘 수 있을 것임(이 때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 등과의 협조관계가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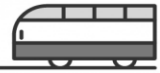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특별법안에 따른 지원의 유형

• 개인별지원:

- 생활지원: 일률적 지원이 아니라 개인별 사정(보호시설 입소기간, 부모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음. 또 기초생활수급비 자격요건을 유지하는 조건도 추가될 수 있음.
- 주거지원: 임대주택, 임시주거비 등의 주거지원을 개인별 사정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교육지원: 개인별교육지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보건의료지원: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고용지원: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심리정서지원: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
- 긴급지원: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법률, 의료, 심리, 경제적 지원을 가능하게 함.

• 집단적지원:

- 심리정서지원:
- 문화예술복지지원



특별법안에 따른 지원의 특징

-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의 특성과 필요성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음.
- 개인별지원계획은 개인별 지원자가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환경, 특성, 의견을 감안하여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여 확정하도록 함. 연장 및 변경도 동일
- 개인별 지원은 개인별 사정을 감안하여 24세까지 지급하고, 교육 및 취업, 질병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27세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제공되는 사회보장급여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이고, 이 권리의 행사에는 행위능력이 제한되지 않음. 부모가 친권 행사를 통해 부당한 개입을 할 수 없게 됨(아동복지법에 따른 시설의 경우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15세에 수립하면 그 때부터는 그 아동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급여에 대해서는 행위능력에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권제한 없이도, 친권남용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음).
- 개인별지원자는 아동·청소년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이 특별법에 따른 권리행사와 관련하여 법정대리권을 가짐. 이를 통해 특별한 수요가 있는 아동의 욕구를 대리할 줄 수 있음.

특별법안에 따른 개인별 지원의 흐름도



특별법안에 따른 지원 참여주체



특별법안과 기존의 보호대상 청소년 자립지원의 차이

	기존 자립지원	특별법안의 자립지원
적용 대상	•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시설, 가정위탁에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	•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시설, 가정위탁에 있는 15세 이상 아동 • 14세부터 6개월 이상 아동보호시설, 가정위탁,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에 있거나 있었던 아동, 여가부 산하 보호시설을 떠난 아동으로 가정복귀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돌봄이 약한 아동으로 15세 이상 23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정형화된 내용의 개인별지원	• 개인별 사정에 따른 탄력적인 개인별지원; 긴급지원 • 집단적지원(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정, 단체 활동 등의 지원)
지원의 성격	• 정형화된 지원. 이의절차 없음	• 이의절차를 둬으로써 점차 개인의 사회보장법상의 권리로 전환될 수 있음
지원연계	• 보호시설 기관의 장의 책임	• 개인적 권리, 개인별지원자가 전담하여 지원함. 지원자는 독립적 지위를 가짐.
지원기관	• 지자체·기관소속의 전담인력이 연계 역할	• 전담지원기관_개인별지원자



이 법안에 따른 지원과 새로운 도전: 보건복지부

대상	새로운 도전
• 아동복지법상의 기존 자립지원 대상 시설 등	• 외형상 변화는 없음. 그러나 형식에는 변화가 있음. • 자립지원계획이 확정된 후(시설을 떠나기 전까지 변경될 수 있음) 제공되는 자립체험, 상담 등도 사회보장급여로서의 성격을 갖게 되고, 아동의 권리가 될 것임(제한되지 않는 행위능력을 함유) • 현행 전담요원이 개인별지원자로 전환되면서 지원의 성격이 달라지게 됨. • 개인별지원자의 역량강화프로그램,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시설에 있을 때와 시설을 떠날 때에 각기 다른 지원이 제공, 기존 시설과의 관계정립, 원가정과의 관계정립 등)을 개별 아동에 적합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는 도전이 있음.
• 기존 자립지원대상 시설이 아닌 복지부 소관 시설	• 개별 법에 따른 지원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 개별 법에 따른 보호시설에 있을 동안에 개인별지원자가 정해질 수 있음. 이들의 주된 역할은 그 시설을 떠났을 때의 지원을 계획하는 것임. 그리고 그 시설장 및 관련 법에 따른 지원자와 더불어 그 시설을 떠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수립하여야 할 것임. • 개별법에 따른 지원이 당해 시설을 떠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배려하지 않을 경우 그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체험과 상담 등)은 있을 수 있음.

이 법안에 따른 지원과 새로운 도전: 여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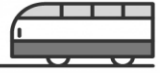
대상	새로운 도전
• 여가부 산하 청소년복지시설 등	• 당해 시설에서 청소년 자립지원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 • 당해 시설을 떠나 더 이상 청소년복지지원법 기타 여가부 소관 법률에 따른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 법에 따른 지원에 연계될 수 있음. 그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음. • 소관법률에 따른 지원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방안을 마련하는 것(개별 법률의 개정을 통해)이 필요함. 또한 이 법에 따른 개인별지원자(전담기관소속)가 수립하는 계획과 소관법률에 따른 개인별지원 계획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라는 도전에 직면할 것임.

이 법안에 따른 지원과 새로운 도전: 법무부

대상	새로운 도전
• 법무부 산하 청소년 교화시설(소년원 등)	• 이 법안과 직접 관련이 없음. • 그러나 비행청소년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공적으로 전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한 이념을 공유할 수 있음. • 청소년 대상 교화시설의 기능에 성인기로의 전이 지원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 이 법안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등을 고민하여야 할 것임. • 그런 계획 수립 하에 대통령령을 통해 이 법안의 시설에 포함되도록 해서 지원을 받도록 할 수 있을 것임.

기존의 법률과 비교해 볼 때 특별법안의 특징

- 기존 개별 법에 따른 지원에는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최대한 넓혀 성인기로의 성공적 전이를 지원하는 플랫폼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개인적 상황, 필요성 등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음. 지원에 상한선을 두고, 유형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음. 이를 통해 불필요한 급여의 수혜 또는 중첩수혜를 막고,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도록 함. 예산의 효율적 사용 보장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만이 아니라 문화적, 심리적 지원에 유의하였음. 이를 위해 집단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함.
-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여, 급부신청과 수령 과정에서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배려함: 개인별지원자와 같이 지원계획을 수립 하되, 지자체가 결정할 권한을 갖도록 함.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개인별지원자(공공기관 소속=사회서비스원 소속일 수도 있음)가 지원을 받는 전 기간 동안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들이 자기책임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갖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도록 함.
- 부처간의 독자의 관할이 있고, 부처 간의 협업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우리 현실을 감안하여 분산되어 있는 여러 부처가 플랫폼처럼 이용할 수 있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소관부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립지원에 가장 큰 몫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가 그 역할을 맡도록 하였음.



감사합니다!

종합토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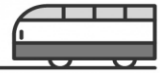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토론문

- 좌 장 윤후덕 국회의원
- 토론자 변효순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황우정 과장(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정익중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김지연 실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이종진 님(보호종료아동 자립멘토 바람개비서포터즈)
허민숙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토론문

토론문

토론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의견

강현주 교수(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07년 3월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자립지원전담요원 배치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약12년 동안 자립지원 정책들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어옴. 그러나 보호종료 아동이 체감하는 어려움과 현실적인 장벽에 대한 문제제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임(국가권익위원회, 2016).

“보호종료아동청소년 10명 중 4명은 국가로 부터 방치된다(2018. 9.20 국제뉴스)” “시설 퇴소청소년 4명 중 1명은(25%)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한다”(2018,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와 같은 기사는 아직도 우리나라 보호아동청소년 관리체계의 허술함을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자립지원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노력이 지금 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정비,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함.

가정에서 이탈되어 여러 유형의 보호체계 속에 있던 아동,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의 영성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임.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필요성과 법안내용의 보완사항을 검토하고자 함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부처별로 혹은 부처내에서도 해당 국, 과별로 각각의 대상별 특성에 맞는 자립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들이 있는데도 특별법을 두는 것이 효율적인가?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자립지원에 관한 내용이 묵시적,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개별적 특수성이 반영된 접근을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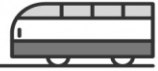
해당 법률 중 아동복지법(제38조~41조)이 보호종료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타 법률들은 사실상 자립지원 규정이 매우 미약하고 사실상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현실에서의 실행은 거의 안 되고 있음. (단적인 사례로 여성가족부 소관의 청소년쉼터, 청소년회복시설 등에 있는 아이들도 가정에서 이탈된 원인과 배경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이들과 동일함. 그러나 우연히 보호되기 시작한 시설이 달랐을 뿐인데 퇴소 이후 자립정착금, 수당 등 각종 자립지원은 아동양육시설 퇴소 아이들만 받을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대해 각각의 개별법의 분법의 형태로 혹은 개별법의 개정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 국가가 보호자였던 청소년들에 대한 성인이행기의 자립은 각각의 보호방식에 따라 보호를 해왔다 하더라도 만 18세까지의 보호와는 다른 맥락에서 ‘자립’이라는 특수한 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특별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 청년지원을 위한 별도법을 준비중인 사례를 보더라도 성인이행기의 자립지원의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으며 특수한 상황에 있던 청소년들의 자립에 대한 별도의 접근이 필요함.

또한 자립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은 공통적으로 자립에서 ‘정서지원’과 ‘정보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음. 경제적 지원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동반되어야 할 중요한 것이 ‘심리, 정서적 지원’이며 자립의 과정은 결국 ‘정보싸움’인 것으로 확인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보호체계나 보호체계 밖에서 떠돌던 청소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 물적, 정보적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복합적 지원체계의 별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특별법 제정은 아동과 청소년의 지원체계가 분리되어 있음으로써 부딪혔던 수많은 한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할 수 있음,

특별법안은 상당히 꼼꼼하게 현실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담긴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첫 번째로 여러 부처들(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을 연계, 조정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쉽지 않은 일임. 컨트롤타워의 위치와 역할이 실제 작동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사문화된 법으로 남을 수 있음. 어떻게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함.



두 번째, 매우 필요하긴 하나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막중한 권한을 위임 받은 ‘개별지원자’에 대한 이슈임. 이들을 현재 추진 중인 자립지원 사례관리사와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것인가가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의 권한, 역량, 처우 등에 대한 현실성있고 신중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세 번째 자립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가 시도가 중심이 되어서는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기 어려움.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이 대부분 도시로 나가 생활한다고 해도 자립과정에서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군구가 전달체계가 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이상과 같은 점들을 꼼꼼히 검토하여 어느 부처에서 소관하는 시설에 있었든 모두 우리의 아이들이란 생각으로 사회를 향해 고군분투하는 청소년들의 자립지원이 보다 안정적이고 촘촘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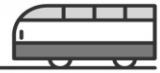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토론문

김지연 실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보호복지연구실)

2011년 「아동복지법」 개정 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과 자립지원정담기관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여전히 지역에 따른 서비스 편차 등 한계와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아동·청소년정책 사무가 이원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체계도 개별 법률을 근거로 제각각 구축·확장되어, 가정에서 분리되어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어떤 게이트웨이(gate-way)로 진입했는지에 따라 자립지원에 차별과 배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지난 5월 23일 발표된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제6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05.17)에서 아동·청소년이 권리 주체임을 강조하고 보호체계 전반에서의 국가책임 강화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즉, 포용국가의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은 게이트웨이에 관계없이 보편적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공적보호체계 내에서 다루어져야 할 국가사무임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인기 이행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노력은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투자’이며 머지않은 장래에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맥락과 방향에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몇 가지 개인적인 우려와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 : 보호종료아동 vs 모든 아동·청소년

- 사실상 공적보호체계에 포착된 요보호아동과 위기청소년(youth at-risk)을 포함하여 모든 아동·청소년이 자립지원을 누릴 권리 주체임. 제안(안)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보호시설(위탁가정 포함)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 제한한다면 법률명의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제2조(정의)에서 보호시설의 종류를 나열하였는데, 18세 미만 아동의 대리양육 기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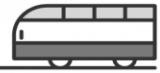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담당하는 동종 유사 보호시설(예, 가정형Wee센터(교육부), 청소년자립생활관(법무부) 등)은 제외되고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이 포함된 논거가 부족함. 보호시설 종류와 근거법은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그 밖의 보호시설이 포함될 여지를 남기고, 아동권리와 정책실효성 측면에서 보호시설의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즉,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개별법을 근거로 자립지원을 받던 아동·청소년에게 어떤 유·불리가 있고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실익이 무엇인지 면밀하게 분석해야함. 예를 들어 「한부모가족지원법」상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자립지원은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이 청소년기의 과업을 달성하고 양육자의 역할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대상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임. 결국 특수한 위기 상황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정(안)의 자립지원이 개별법보다 더욱 두텁고 촘촘해야 할 것임.
- 한편, 제정(안)에서 자립지원 대상을 보호시설 입·퇴소자로 제한할 경우 가정에서도 분리되고 보호시설 입소도 거부한 채 고시원·여인숙·쪽방·숙박시설 등 주거지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장기간(3개월 이상) 생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이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에 잔존함. 아웃리치(out-reach) 과정에서 이들을 발굴해도 자립지원을 하려면 6개월간 보호시설 입소가 전제되어야 함. 즉, 보호시설 입·퇴소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탈위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어 노숙청소년 등 고위기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립지원 신청자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제정(안)의 보호대상 아동·청소년 연령범위의 경우 하한(15세)은 「아동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수립 대상 아동 연령, 상한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연령(24세 이하)을 준용함. 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연령기준이라는 점에서 연령범위 근거가 대체로 타당하고 적절함. 다만 현재 17개 광역시·도의 청년기본조례 상 청년 연령이 10대(19세)부터 30대를 포괄하는데 제정(안)에서 1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을 보호대상 ‘아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함(23세의 아동??). 특히 「아동복지법」은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25세에 보호종료된 경우 원칙적으로 30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제정(안)을 적용하면 자립지원 대상 연령이 24세까지로 축소됨.

2. 자립지원 공공성 강화 : 시·군·구 아동·청소년 보호체계 내에서 자립지원 담당(지자체 책무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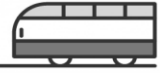
- 자립지원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복지 주요사무가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행을 탈피하고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함. 제정(안)에서 “자립지원전담기관 분사무실을 권역별로 설치·운영”하는 조항은 이러한 방향에 전혀 부합하지 않음. 지역자립지원전담기관이 종전과 같이 국비 투입 없이 지방사무(지방비)로 계속 추진된다면 기존의 불비(不備)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권역별 설치가 가능할 경우 자치단체장이 책무 이행에 더욱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보다 개악된 측면이 있음.
- 특히 아동·청소년의 자립은 어느 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종료되는 과업이 아님. 자립지원도 보호체계 내 서비스 연장선상에서 각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수사무이므로 제정(안)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반적으로 재고가 필요함. 제정(안)이 자립지원의 공공성, 접근성, 정책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도록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시·군·구 (가칭)아동보호팀의 고유사무로 자립지원을 설계하고, 기존 민간기관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수단(DB 연계 및 접근권한 부여 등)을 강구할 것을 제안함. 또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시·군·구 공무원 사회복지사’가 결국 제정(안)의 개별지원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며(아동 규모 적용 증원), 시·군·구에 배치된 개별지원자와 시설에 기 배치된 개별지원자(자립지원전담요원)와의 역할 분담과 광역시·도, 시·군·구, 시설 및 기관으로 이어지는 자립지원 운영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임.
- 시·군·구가 자립지원을 고유사무로 담당할 경우 대상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 서비스 이력 등 민간과의 DB 연계·활용 문제도 원만하게 처리 가능함. 제정(안)에 개인정보 연계·활용을 위한 ‘정보공유 등의 협조요청’과 같은 장치(조항) 마련 필요.
-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제14조)’는 강행규정도 아니고 전담공무원 배치는 자치단체장의 재량이므로 실현가능성이 낮은 공허한 조문임.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각각 규정한 전담공무원조차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 이를 반증함.



3.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 강구 : 개별법의 개정 가능성 우선 타진, 개별법과의 연계 강화 모색

- 아동정책기본계획(복지부),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여가부)이 매 5년 마다 장기계획으로 수립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함. 기본계획 수립이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인프라와 사회서비스 확충을 위한 실행력을 담보하는 수단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은 작금의 현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이에 또 다른 기본계획은 비효율에 따른 행정력 소모가 우려됨.
- 현행 중앙부처 수준의 위원회 운영방식을 감안할 때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두는 안(제10조)은 실효성, 확장성 측면에서 재고가 필요해 보임. 18세 이상 아동과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자립 사안을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둘 것인지(국무총리), 상대적으로 위상이 낮지만 청소년정책위원회(여가부)에 둘 것인지, 국무총리 산하 다른 위원회나 기구(예, 청년정책추진단 등)에 둘 것인지 등
-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제34조)’와 같은 임의규정은 선언적 조항에 가까워 필수지원은 강행규정으로 명시 필요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현행 방식대로 지방사무로 추진할 경우 보편적 자립지원을 위해 최소한 법률과 하위법령에 시설기준 및 인력배치 최소기준을 포함하는 것으로 「아동복지법」 개정 검토 필요
- 제정(안)과 별도로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하위법령의 ‘위기청소년’ 자립지원 조항이 매우 부실하므로 특별법과의 연계를 고려할 때 전면 개정이 필요해 보임. 특히 「아동복지법」상 자립지원 서비스 차별과 배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을 근거로 난립한 동종 유사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이 지자체 보호체계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재편도 모색해야 함.
- 제정(안)에서 주거지원을 명시한 것과 별도로, 국토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 지침」에서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등 보호시설 및 보호종료 아동·청소년을 ‘주거취약계층’에 포함하여 (주거지로서 적절하지 않은 곳에서 3개월 이상 임시 거주하지 않아도) 임대주택 등 국가차원의 주거지원사업에 바로 진입(신청)하도록 ‘주거권’을 보장을 위해 지침 개정이 더욱 시급해 보임.
- 제정(안)은 이의제기 등 선진적인 조항을 포함함. 다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

원'을 위한 상위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개별법에 대한 검토 뿐 아니라 현행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지형과 다종다양한 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의 입소자와 자립지원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불가피해 보임. 포용국가 아동·청소년정책 위상에 부합하고 국가책임을 실현하여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확대를 선도하는 특별법 탄생을 기대함.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토론문

이종진(보호종료아동 자립멘토 바람개비서포터즈)

입론

본인은 이번 자립지원대상 확대와 구체적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바이다.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자립예정아동이 좀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기존 발생하는 자립 후 청소년들의 문제점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경우는 보육원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퇴소하여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현재 존재하는 1:1 정부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이 존재하지 않았고, 자립 정착금 역시 지자체 예산이 없어 매우 적은 돈을 갖고 퇴소를 하게 되었다. 그 때 당시 LH라는 임대주택 지원 제도도 현재와 다르게 공급이 미비했으며, 자립 이후의 삶이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그 후 디딤씨앗 통장 신설 및 자립 정착금 상향, 청년 임대주택 공급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본인의 자립 시기보다 현재 부족하지만 자립 예정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자립 예정 청소년 그리고 자립 후의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본인의 주장에 따른 근거는 아래와 같다.

반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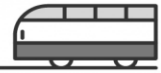
폭 넓은 자립 지원 대상의 확대

현재 통상적인 자립 예정의 아동들은 18세가 되어 자립을 하게 되어 있다. 대학을 가게 되면 보호 연장을 통해 보육 시설에 거주할 수 있지만, 어릴 적부터 보육시설에서 자랐던

청소년들의 심리상 빠른 기간 내에 보육원을 퇴소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립은 경제적 및 심리적인 불안과 부족이 찾아오게 된다. 또, 간혹 보육원에서 5년 이상 생활하지 않은 남성의 경우는 군대 의무가 따라오게 되는데, 진학 또는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과 군대를 다녀온 후 복귀하는 시간을 따지게 되면 현재 18세의 자립은 너무 이르다. 보호종료 아동 대상 LH 소년소녀가정 전세주택 지원제도는 2018년 3월 변경 이후 만 20세이하 무이자, 20세 이상 보호 종료 5년 후 50% 감면, 5년 경과 후 1~2% 이자대로 변경되었다. 기존 20세 이상의 경우 1~2% 이자를 냈던 것에 반하면 자립을 하는데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이 되고 있다.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원받지 못할 경우 청년전세임대(대학생 임대)가 있는데 이 부분 역시 기존 전세자금 한도액을 1인기준 수도권 1.2억 으로 상향하여 더욱 폭 넓은 주택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도 수급권자로서 수급비용을 받게 되면 이자 면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변경되었으면 하는 바이다. 다양한 자립 이후의 사례들을 보아 폭 넓은 자립 지원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중앙자립지원센터 신설

보호 예정 청소년들은 자립 이전의 관리도 중요하지만 실제 본인들에게 와 닿는 자립 이후의 보호도 중요하다 생각한다. 자립 이후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경제적으로 넉넉치 않은 자립 청소년의 경우 법적인 보호 장치를 알아봐야 한다. 예를 들면 수급권자 신청과 임대주택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복지로라는 공공 포털 사이트가 있지만 자립 후의 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들과 달리 본인이 주체적으로 무엇을 해본 경험이 많지 않고, 실제 지원 정책을 찾아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자립전담요원이라는 직책이 새로 생겨 자립 전에 다양한 자립 교육을 시·군 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담요원이 밀착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경험이 전무하거나 자립 전담요원 별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중앙자립지원센터 신설을 통해 자립전담기관의 평가와 실질적으로 자립 예정아동에게 필요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긴급지원 등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실제 주변에서는 갑자기 몸이 아파 병원을 가야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병원을 가지 않는 경우들도 다수 존재한다. 이 경우 의료비 대불제를 이용하면 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하여 모르는 경우가 다수이다. 이런 경우 긴급지원 콜센터 등을 통해 자립 후 청소년의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성 확보

현재 각 자립전담요원 별 교육과 경험의 깊이가 상이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경우 정보의 비대칭이 매우 큰 상태이다. 자립 전 청소년들은 자립의 경험을 가진 선배들을 더욱 따르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이번 법안에 추가된 바로 자립지원전담기관 신설을 통해 전문성이 확보된 자립 요원을 배양하고 더욱 견고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 개인 별 지원계획 등과 같이 각 아동의 심리적인 지원과 진학, 취업 관련 교육 및 상담이 문화적, 종교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결론

이 외에도 이번 법안에 다양한 자립 예정 아동 및 자립 후 청소년 지원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존재한다. 제일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은 획일화 되어 있는 교육과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이 아닌 차별화되고 개인화 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 하고 싶다.

개인별 사정이 매우 다르고, 보육시설에 입소 그리고 퇴소한 과정 모두 다르다.

본인의 경우 퇴소 후의 큰 이식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당시 본인의 보육시설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심장 재단 그리고 아산 재단등과 같은 후원 시설로부터 금전적인 후원이 이루어 졌다.

이 경우 본인이 자랐던 시설장의 추천과 함께 심리 담당 선생님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했다.

또, 실제 4년 정도 보육시설에서 거주하며 대학을 진학했지만 군 문제로 인해 군대에 들어간 동생들도 있다. 이 경우 임대주택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실제 법적인 복지 지원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계속적으로 본인이 알아보아야 했고, 또 자립전담요원의 경험 차이로 인해 보육시설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해당 담당 공무원 역시 공무원마다의 경험과 노력 정도의 차이로 인해 어떤 동생은 지원을 받고 어떤 동생은 지원을 못 받게 되는 불균형적인 현상도 이루어 졌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 그리고 청소년들의 정보의 비대칭이 크며, 각 개인마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법안을 통해 신규 중앙자립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긴급 지원 핫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인다. 또, 전문성 있는 요원들을 교육하고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자립 전 그리고 자립 후의 심리적 및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수십 년간 바뀌지 않았던 자립 아동에 관련된 것들이 또 수십 년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앙지원인 장애인법과 다르게 아동 법은 현재 지 자체로 구분되어 있다. 이번을 통해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이번 법안을 통해 앞으로 자립 후의 청소년들도 사회에 관심을 보이고 더 많은 동생들을 이끌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법안이 힘들게 진행된 좋은 결과가 있기를 자립 후 선배로써 꼭 바란다.

토론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윤후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9. . .

발 의 자 : 윤후덕 의원

찬 성 자 : 인

제안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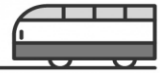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하고 있는 15세 이상의 아동과 18세가 되어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목적이 달성되어 퇴소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자립지원의 대상을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하고, 지원하는 내용·방법 등의 지원체계도 개선하여 자립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립지원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정의함(안 제2조).

- 나. 부모와 보호시설의 장, 위탁가정 부모의 책임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라. 개별지원자 및 개별지원자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및 제18조).
- 마. 자립지원의 신청, 개인별지원, 지원연장 등 자립지원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9조부터 23조까지).
- 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의 내용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34조까지).



법률 제 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자기책임 및 사회적 연대의식하에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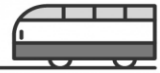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

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 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 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일반 지원시설과 청소년 지원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 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2. “위탁가정”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이 일정기간 위탁되는 가정을 말한다.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란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 등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으로서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별지원”이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개인별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 그에게 개인별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별지원자가 전담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개별지원자”란 개인별지원 대상인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하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라 한다)이 개인별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원이 종료될 때까지 전담하여 지원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어떠한 차별이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정 및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부모의 책임) 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이 면담, 상담, 정보제공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②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성공적인 성인기 이행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

제5조(보호시설의 장 등의 책임) ①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자기책임과 사회적 연대의식하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

②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개인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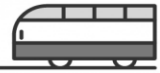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2.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생활·복지·교육·취업·주거 등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 관련 전달체계의 구축 및 제도 개선



4.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부처별 주요 시책과 협조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제10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각각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에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나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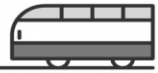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 ① 아동·청소년자립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법무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여성가족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2. 보호시설 관련 단체의 장이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위원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실태파악과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현황 파악과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를 상호 공유하여 제7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의 아동·청소년자립지원추진위원회의 심의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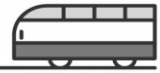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정보의 공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자립지원 기관 등

제12조(중앙자립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자립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실태조사·연구
 2. 제13조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평가 및 운영지원
 3. 자립지원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보급
 5. 자립지원 사업 추진실적 분석·평가
 6.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위기관리를 위한 긴급지원 콜센터 운영 및 긴급지원 서비스 개발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중앙자립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자립지원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지원대상자의 수, 지역적 분포, 지원내용 등을 고려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의 분사무실을 권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2.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3. 개별지원자의 배정
 4. 개인별지원 대상 아동·청소년 및 개별지원자에 대한 관리. 자립지원계획 실행 점검을 위한 회의체 운영을 포함한다.
 5.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6.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 관련 교육·상담 지원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개별지원자 1인당 30인 이상의 개인별 지원대상 청소년을 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배정할 수 있다.
- ③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개별지원자의 배정에 있어서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문화, 의견, 성별, 종교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직영하거나 공법인으로 하여야 한다. 유사한 성격의 공법인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 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전담공무원(이하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하며,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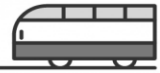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③ 전담공무원은 제19조, 제21조에 따른 자립지원신청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며, 관할 구역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협력) ①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자립지원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보호시설, 위탁가정 등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관계 기관 또는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6조(개별지원자의 배치) ① 시·도지사는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개별지원자를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배치한다.

1.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5년 이상 아동·청소년 관련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② 개별지원자는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개인별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거나 되었던 적이 있는 사람은 개인별지원자로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2항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아동·청소년이 개인별지원자의 재배정을 요구한 경우 이의제기 대상자는 이의절차가 종료되기 이전까지는 당해 아동·청소년의 개인별지원자로 활동할 수 없다.

제17조(보수교육) ① 개별지원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서 상담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질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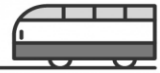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제4장 자립지원 절차 등

제18조(자립지원 신청 등) 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그의 위탁가정 부모, 그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탁받은 보호시설의 장, 또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자립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의 신청을 받은 후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에게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 지원의 내용·범위 등이 포함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별지원 급부의 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1.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2. 보호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14세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3세 이하의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으로서 가정복귀가 되지 않았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돌봄이 취약하여 성인기로 전이하는 데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인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제20조(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장은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을 의뢰 받은 경우 개별지원자를 배정하고, 제19조
제2항, 제20조에 따라 개인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개인별지
원의 내용·범위 등을 파악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신
인,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그의 부모 또는 후견인, 보호시설의 장 및
위탁가정의 부모를 면담하여야 하고, 그 밖에 자립지원대상 아동·청
소년의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람을 면담할 수 있다.

② 개인별지원계획에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개인별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거부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
을 받아야한다.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도 그
러하다.

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립지원 신청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의 방법, 절차, 내용, 변경·수정, 지원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개인별지원계획의 검토 및 변경) ① 개별지원자는 매년 개인별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제공되는 개인별지원의 적합성과 효과성

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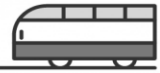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개인별지원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지원기간 및 연장) ①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24세가 될 때까지 개인별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이하의 학교(대학원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경우
2. 직업 관련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3. 경계선지적기능·장애·질병 등의 이유로 자립이 어려운 경우
4.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또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의 기준·기간·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행위능력) ① 민법 제1조부터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서 정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은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개별지원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개별지원자는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지원의 신청·수령, 수령한 지원 관련 급여의 처분, 기타 지원 관련 사항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을 대리할 권한이 있다. 다만, 의사능력이 있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으로서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자립지원의 내용

제24조(생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개인별 사정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을 결정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기준·지원금액·지원기간·지원방법·절차, 제3항에 따라 수급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는 지원금의 처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주거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적절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임대주택의 공급 또는 임시주거비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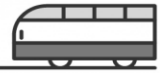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② 제1항에 따른 주거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자아실현 및 자립을 위하여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보건의료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예방접종, 건강검진, 상담, 진료 등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자



립지원대상 청소년 진료시설로 지정하고, 전문적인 처치와 수술 등을 필요로 하는 전문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고용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수립된 개인별지원계획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고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원, 취업알선, 직업능력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자산형성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하여야 할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범위와 해당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선정·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29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의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3.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5. 그 밖에 자산형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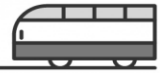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리
2.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위한 금융상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31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과 여성가족부장관은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자산관리업무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심리·정서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인적·물적 대상과 상호작용하며 유대감 및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봉사·취미·교육 프로그램 등의 집단적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리·정서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긴급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법률·의료·심리·경제적 지원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한 자립지원 외에 문화·예술·스포츠 등의 영역에서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5조(보고와 검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제12조의 중앙자립지원센터, 제13조의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제18조의 개별지원자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하여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6조(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

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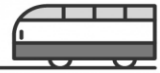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아니면 중앙자립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9조(이의신청) ① 제20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내용 결정, 개별지원자의 배정과 변경,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벌칙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립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앙자립지원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유용한 자
3. 제3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제4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그 밖의 개인이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

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보고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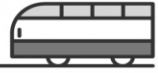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2항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5의2.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1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절의 제목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 및 자립지원 등”을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지원”으로 한다.

제38조부터 제44조까지 삭제한다.

제59조제6호 및 제7호를 삭제한다.